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 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1999.1.29 법률 571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중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한다)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3조 (지방이양 등의 기본원칙) ①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것
3.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할 것
4.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준수할 것
5.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군·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
6.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중 시·군·자치구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사무등 그 업무의 성격상 시·도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시·도로 이양할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한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사무처리기준의 고시근거를 당해 법령에 명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중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그 업무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병행)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지원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6조 (설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양사무의 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위한 대상사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구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전담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조사·확정

제1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대상사무의 조사) ①위원회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대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진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 필요한 사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조사)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조사 결과에 포함된 사무와 위원회가 자체조사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등의 대상사무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단체등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의대상의 선정) 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위한 심의대상을 선정한다.

제17조 (대상사무의 확정 및 공표등) ①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무를 심의·의결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대상을 확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 (이양의 특례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 또는 사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중앙행정권을 이양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이양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가 그 업무의 성격, 사회일반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양사무의 환원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지방이양 등의 사후관리

제19조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로부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의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받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원의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관계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의)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개정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확정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재심

사 및 그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추진실태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상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5710호, 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